

설명자료

식육 수입 · 판매업 영업자 간담회

1. 축산물 전자위생증명서 추진
2. 5년 주기 정밀검사제 시행
3.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4. 하반기 수입 식육 통관단계 동물용의약품 검사

□ 추진배경

- 축산물 수입신고 구비서류인 수출 위생증명서(종이)를 정부 간 시스템을 통해 디지털정보로 송·수신하여 영업자 편의 증진 및 탄소중립 실천
- * 수입자 등이 종이 위생증명서(원본) 제출 없이 유니패스(관세청 연계)로 수입신고 가능

□ 그 간 추진경과

- 전자증명서 인정근거 마련(수입식품법 시행규칙 개정, '18.2)

※ 국가별 추진 현황

- (호주) 전자위생증명서 시스템 구축, 호주산 식육 시범운영, 호주산 식육 정식 운영('21.9월~)
- (칠레) 전자위생증명서 시스템 구축, 칠레산 식육 시범운영('22.4월~)
- (기타 국가) EU, 태국, 뉴질랜드 등과 협의 중

□ 향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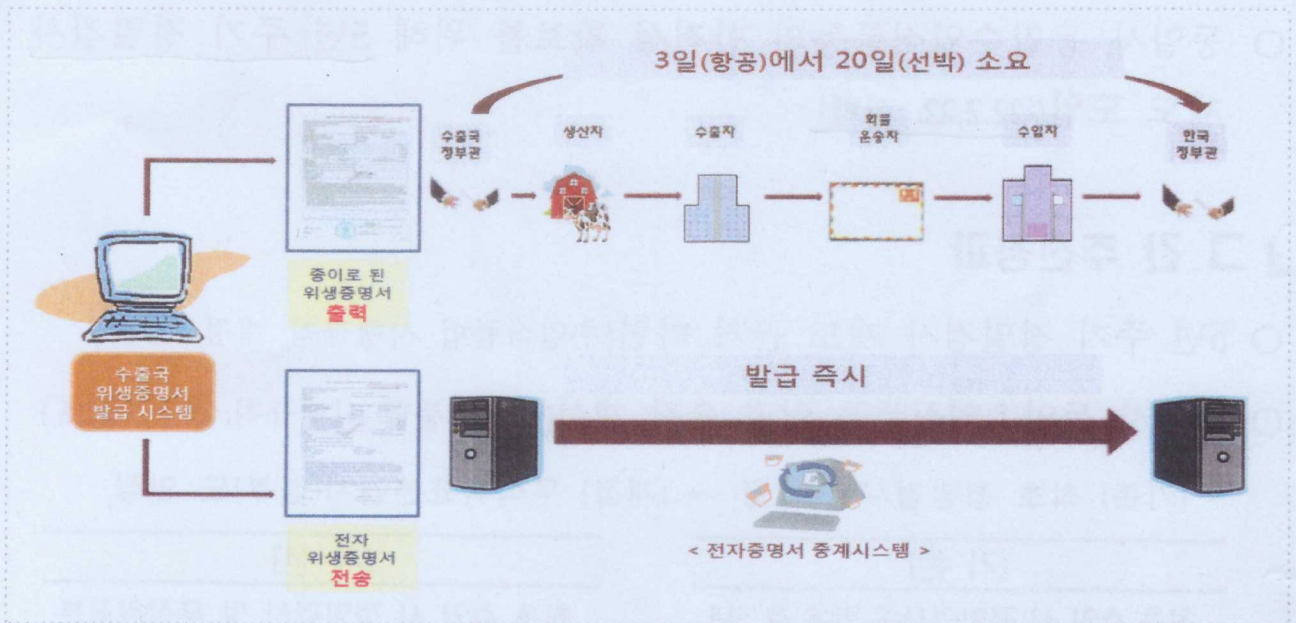
- 주요 수출국과 전자위생증명서 확대 협의 지속 추진
- * EU, 태국, 뉴질랜드 등과 FTA/SPS 위원회 논의 및 기술협의 등

□ 기대효과

- (산업) 수출입 영업자 등에게 시간·경제적 비용 지원 효과
- (행정) 증명서 위·변조 원천 방지 및 검사업무 효율화
- (환경) 탄소중립 실천을 통한 기후환경 변화 대응
- (소비자) 신속 통관지원으로 더 신선한 수입식품 공급 효과

참고 전자위생증명서 적용

□ 전자위생증명서 송·수신 흐름



□ 수입신고 시 적용방법

- 수입자가 관세청 통관단일창구(Unipass) 홈페이지*를 통해 수입 신고 시 수입신고서에 수출 위생증명서 번호 입력

* <http://unipass.customs.go.kr>

관세청 통관단일창구의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화면

*수출국 AU Q 포우

가공과정

*국내도착일 Q

*입적일 Q

품목정보보조번호

*유기식품 여부 예 아니오

*식품조식처리 여부 완제품조사 원료조사 해당없음

*그외양치영양 식품 해당 여부 예 아니오 해당없음

*서류검사 또는 원장검사 예 아니오 자년도 계획수입 신청 및 안전통 관세에 한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위생증명서발급번호 기타

수입전자위생증명서 검증 - 프로필 1 - Microsoft Edge

<https://unipass.customs.go.kr/csp/csw/reqrqmt/op/mnt/food/EtcImpDchM/Ctr/openCSW0101017P.da>

수입 전자 위생 증명서 검증

* 수출국으로부터 발급받은 전자 위생 증명서 번호를 입력하여 식약처와 연동으로 증명서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 검증된 증명서 여러 건을 한번에 수입신고서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위생증명서번호 9827368

조기화

조회

증명서번호	품목명	수출국	신고일자	종류
	CHILLED BEEF OFFAL "YP" THIN SKIRT 외 19건	Australia	2021-04-30	출원서

관세청 온라인 수입식품 신고 화면에서 각 국가에서 전송된 위생증명서번호로 조회한 후 선택하여 입력

수입신고서에 반영

안건 2

5년 주기 정밀검사제 시행

□ 추진배경

-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5년 주기 정밀검사 제도 도입('22.2.22. 시행)

□ 그 간 추진경과

- 5년 주기 정밀검사 제도 근거 마련(수입식품법 시행규칙 개정, '17.2.)
-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 인정 요건 개선(수입식품법 시행규칙 개정, '21.6.)

* (기존) 최초 정밀검사만 인정 → (개정) 무작위표본검사(일부)도 인정

[기 존]	[개 선]
최초 수입 시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수입된 것	최초 수입 시 정밀검사 및 무작위표본 검사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수입된 것

□ 주요내용

- (대상) 최초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 받은 후 5년 경과 수입식품등

구 분	유효기간	비고
'17.2.22. 이후 선적되어 최초 또는 무작위표본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최초 또는 무작위표본검사 수입신고 확인증 발급일 기준으로 5년 기산	무작위표본검사의 경우, 검사항목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달라짐
'17.2.22. 이전 선적되어 최초 또는 무작위표본검사를 받은 경우	'17.2.22. 이후 선적된 수입식품등에 대해 처음 수입신고확인증 발급일 기준으로 5년 기산	

- (검사항목) 해당 식품유형의 최초 정밀검사 항목(신고일 기준)

□ 참고사항

- 관련 질의응답 자료집 게시물 참고(수입식품정보마루 누리집)

* 수입식품정보마루 누리집(<http://impfood.mfds.go.kr>)

참고 5년 주기 정밀검사 시행 질의응답 자료집

Q1. 수입식품 등 '5년 주기 정밀검사' 제도란?

- 최초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를 받은 후 5년이 경과된 수입식품 등은 정밀검사 대상이 되는 제도입니다.

Q2. 유효기간 5년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 2017년 2월 22일 이후 선적되어 최초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를 받은 경우, 수입신고확인증 발급일자를 기준으로 5년을 기산합니다.
- 다만, 2017년 2월 22일 이전에 선적되어 최초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를 받은 경우, 2017년 2월 22일 이후 선적된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 처음 수입신고확인증이 발급된 날을 기준으로 5년을 기산합니다.
- ※ 참고로 무작위표본검사의 경우 검사항목에 따라 5년 주기 정밀검사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최초 정밀검사 후 무작위표본검사를 여러 번 받은 경우는?

- '5년 주기 정밀검사' 시행 이후 현 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무작위표본검사를 받아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기산합니다.

Q4. 이전에 발급받은 수입신고확인증을 확인하는 방법은?

- 수입식품정보마루(<https://impfood.mfds.go.kr>)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나의민원 > 수입신고 진행상황 > 해당 접수번호 선택 > 출력 > 수입신고확인증 선택·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5.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미리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 최초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를 받은 후 유효기간(5년)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서류검사 대상에 해당합니다.
- 다만, 경우에 따라 현장검사, 무작위표본검사 또는 위해정보 등에 따른 정밀검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6.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정밀검사가 진행 중에 동일제품이 수입되는 경우?

-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정밀검사가 진행 중이나 수입신고확인증이 발급되기 전에 다시 수입하는 경우 정밀검사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Q7. 수입내역 중 '5년 주기 정밀검사'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 '22년 2월 22일부터 수입식품정보마루(<https://impfood.mfds.go.kr>)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나의민원 > 수입신고 진행상황에서 정기 정밀검사 대상 여부, 유효기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 다만, 무작위표본검사의 경우 검사항목에 따라 5년 주기 정밀 검사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건 3

축산물 수입검사 관련 제도변경 사항

○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22.1.1.시행)

해외작업장 안전관리 강화

개선사항

☞ 위해 확인 해외작업장에 대한 시정조치 세부절차 마련 [제16조의2 신설]

✓ 축산물 수입검사 결과 **위해*가 확인**된 경우, 수출국 정부에 시정 요청 통보내용, 자료제출 기한, 미 조치시 해당 해외작업장에 대한 수입중단 조치 등 **세부절차**

* 잔류물질(동물용의약품, 농약 등), 식중독균(살모넬라, 리스테리아, 황색포도상구균 등) 등

⇒ 시정조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해외작업장 안전관리 강화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해 확인 수입 축산물을 생산한 해외작업장에 대해 수출국 정부에 시정 요청 ·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수입중단 조치 필요한 경우는 수입중단 조치 가능 * 수입식품법 제1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인된 위해 시정조치 세부절차 마련 - 시정 요청 및 부적합 관련 통보 내용 - 원인조사 및 시정조치를 3개월 내 제출 - 미조치 또는 미흡한 경우 수입중단 조치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심의)

부적합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개선사항

☞ 현장검사 부적합 축산물에 대한 검사 강화 [안 제16조제5항]

✓ 현장검사* 결과, 전반적 변질, 이물 오염 등으로 **전량 부적합** 된 축산물과

동일사 동일 축산물은 **5회 연속 현장검사**

* 제품의 성질·상태·맛·냄새·색깔·표시·포장상태 및 정밀검사 이력 등을 종합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검사 결과 전량 부적합 - 신고수량의 <u>20%이상</u> 부적합 또는 전반적 변질, 이물오염 등 선별조치 불가 * 관능검사 기준 및 방법(고시 별표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검사 전량 부적합 시, 이후 수입되는 동일 제품 5회 현장검사

정보공개 확대

개선사항

☞ 정보공개 범위 확대 [안 제20조제3항]

✓ **기준·규격 신설·강화** 정밀검사 항목 추가 공개 ⇒ 수입검사의 투명성 강화

✓ (공개정보) 해당 품목(유형) 및 검사항목

✓ 수입식품정보마루 홈페이지(<https://impfood.mfds.go.kr>)에 공개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정밀검사 항목· 검사 중인 식육의 정보(생산국·품목·해외작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정밀검사 항목· 검사 중인 식육의 정보(생산국·품목·해외작업장)· 기준·규격 신설·강화 검사 항목

전산정보 활용 확대

개선사항

☞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 활용 확대 [안 제 6조제1항 및 제16조제4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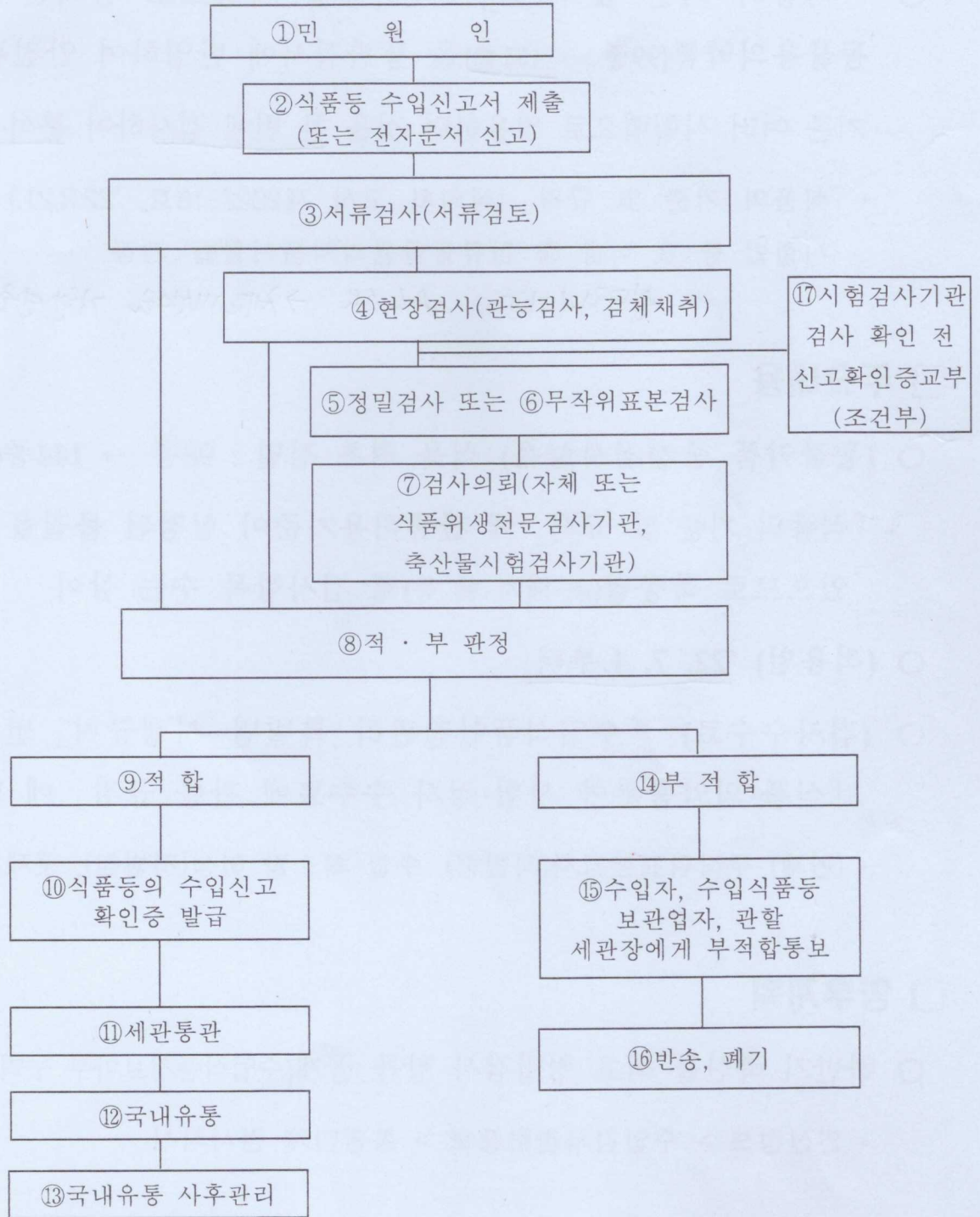
✓ 수입신고 내용 확인을 위해 제출하는 증빙자료 중,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 제외**

✓ (예) 자사제조용 수입 축산물의 '품목제조보고서'(품목제조번호 입력으로 대체) 등

✓ 검체 인수, 인계 사항은 전산으로 확인 가능

<참고> 수입 축산물의 신고 및 검사절차

- 수입 축산물 신고·검사 동영상, 설명자료는 수입식품정보마루 누리집에 게시(알림자료 > 교육자료 > 교육홍보자료 > 교육자료)



□ 추진배경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시험법 개정으로 동시분석 가능한 동물용의약품(99종 → 151종)을 통관검사에 반영하여 안전관리 강화
- 기존 여러 시험법으로 적용하던 것을 한 번에 검사하여 분석시간 단축
-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제2022-16호, '22.2.21.) 제8. 일반 시험법 중 '8. 식품 중 잔류동물용의약품시험법' 개정

이원처기법 상이 소 → 제214번으로 기한 연장 노력.

□ 주요내용

- (동물약품 중검검사항목) 식육 최초 정밀 : 98종 → **144종(예정)**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물질을 검사하고 있으므로 축종별(소·돼지·닭 등)로 검사항목 수는 상이
- (적용일) '22. 7. 1.부터
- (검사수수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5 및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에 따름
- * (면제) 무작위표본검사(지방청), 수입 최소량 이상(지방청), 문제제기 등

□ 향후계획

- 하반기 축산물 최초 정밀검사 항목 공개(수입식품정보마루 누리집)
- * 안전정보 > 수입검사관련정보 > 통관단계 검사지시